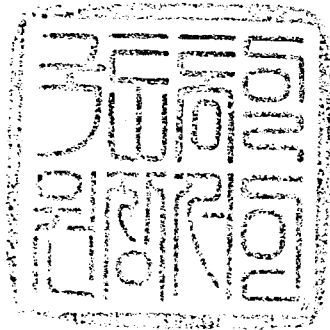


이 보고서를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9.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안 해 균

연구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영 희

目 次

第1章 序 論	3
第1節 研究目的及 範圍	3
第2節 概念의 定義	6
第3節 南北韓 經濟交流体制의 比較	8
第2章 分断国 經濟交流의 先例	13
— 東西獨의 경우 —	13
第1節 經濟交流의 段階	13
第2節 經濟交流 担当機構	23
第3章 北韓의 貿易制度와 機構	25
第1節 北韓貿易의 發展過程	25
第2節 北韓의 貿易機構	30
第3節 豫想되는 北韓側 經濟交流 担当機構	38
第4章 段階別 經濟交流 担当機構案	41
第1節 經濟交流政策樹立機構의 代案	41
第2節 協商機構	44
第3節 執行機構	44
第5章 經濟交流 行政支援機構	50
第1節 商品去來 支援機構	50
第2節 其他協力 支援機構	51
第6章 結 論	53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目的과 範圍

1. 研究目的

7.4 南北共同宣言 第6項에 의거하여 南北調節委員會에 政治 外交 軍事 經濟 및 社会文化的 5個分科委員會를 두기로 南北이 合議하였다. 그리하여 6月12日 서울에서 열린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李厚洛 共同委員長은 于先 經濟分科委員會와 社会文化分科委員會를 조속히 發足시키자고 提議하면서, 經濟分科委員會에서는 經濟人的 交流, 物資의 交流, 科学技術의 交流, 資源의 共同開發, 商品展示會의 交換開催, 商社의 交換常駐등 經濟的으로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措置들을 實踐에 옮겨야 한다고 力說했다. 註1)

經濟分科委員會가 構成되어 南北間에 經濟交流가 實現되려면, 먼저 對北經濟交流政策을 立案하고, 北韓側과 이를 協商하며, 妥結된 事項을 執行할 機構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南北交流担当機構問題는 比단 經濟交流分野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南北調節委員會 5個分科委員會의 運営에서 共通的으로 登場하는 問題이다.

他分野의 交流問題도 考慮하면서, 南北間 經濟交流의 担当機構를 構想하여 보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다.

2. 研究範圍

1972.12.21日의 東西独基本条約과 7.4 南北共同宣言을 契機로

註1) 朝鮮日報, 1973. 6. 13.

같은 分断国인 独逸과 韓國이 나가는 進路의 特徵은 前者는 Abgrenzung(demarcation)로 後者는 Annäherung(rapprochement)로서 正反對로 달리고 있다. 西獨은 드디어 ein nation zwei starten을 認定했다.

한편, 東獨 共産党首 Erich Honecker는 西獨의 「民族統一論」을 虛構라고 攻撃하여 오더니, 1973年 6月 22日 西獨議會가 東西獨基本條約을 批准하니까 두獨逸國家論에서 비약하여 두民族論을 들고 나오고 있다.註2) 東西獨의 永久 分離를 主張하면서 西獨을 完全한 外國으로 간주하고 있는 東獨은, 對西獨交易을 管轄하는 機構로서 한 省을 두고 있다. (後述)

西獨과 마찬가지로, 韓國도 部 또는 局水準의 對北經濟交流担当 行政機關을 別途로 만들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西獨은 東獨을 國家로 認定하지만, 우리는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東西獨協商의 歷史가 우리의 現實에 꼭 符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定하지만, 그들의 先驗을 參考하는 것은 無益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現在의 諸般 与件을 감안할 때, 經濟分科委員會의 참여없는 南北經濟交流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對北經濟交流 協商機能은 南北調節委員會 經濟分科委員會가 担当하여야 한다. 對北經濟交流協商을 하려면, 于先 우리의 南北經濟交流에 관한 政策이 立案

註2) The Guidian, 1973. 6.22.

되어야 한다.

南北調節委員會는 大統領의 國家統治權에 근거하여 탄생되었기 때문에, 調節委員會가 스스로 對北協商方案을 決定할 수는 없다. 따라서 對北經濟交流政策을 立案할 大統領의 補助機關으로서, 政策立案機能을 担当할 機構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經濟交流政策이 確定되면, 이것을 갖고 經濟分科委員會가 北韓側과 協商을 하게 된다. 經濟分科委員會의 協商機能을 商品交易에서 例를 들면, 去來品目表의 提示, 價格, 去來規模, 決済方法, 關稅, 引渡場所 및 仲裁方法등 去來의 一般條件에 관한 協商이 될 것이다.

商品去來 資本協力 또는 技術協력과 같은 後述할 經濟交流類型別 協商이 끝나면 交流類型別로, 南北經濟分科委員會의 合議事項을 執行할 執行機構들이 있어야 한다. 執行機構는 勿論 民間經濟團體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理由는 우리가 自由市場經濟體制를 띄고 있고 그의 優越性을 誇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對外去來에 있어서 一般去來條件의 協商은 民間業體의 所管事項이나, 對北經濟交流에 있어서는 決済方法이나 引渡場所까지도 高度의 政治性을 띄기 때문에, 이것을 執行機能을 担当할 民間經濟團體들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

本研究에 있어서 主된 關心의 對象은 經濟交流政策 立案機構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이 機構를 構想함에 있어서, 現存 關係政府機關을 活用하는 方案과, 새 機構를 創設하는 두가지 方案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方案을 本論에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南北調節委員會 經濟分科委員會의 構成은, 이미 그가 担当하여야 할 機能을 앞에서 分析 記述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具體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에 北韓과의 經濟交流를 直接担当할 民間經濟團體들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政策立案機構 協商機構 및 執行機構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行政支援機構問題이다. 水産物을 北韓에 輸出하는 경우를 例로 들면, 水産庁이 行政支援機構가 될 것이다.

經濟交流를 實現段階別로 区分하면, 提案段階, 協商段階, 實施段階, 交流擴大段階 및 統合段階로 区分할 수 있다. 註3)

그런데 經濟的 統合은 政治的 統合移行을 爲한 前提段階로 보기 때문에 註4) 本研究에 있어서는 提案段階로부터 擴大段階에 亙하는 期間의 經濟交流担当機構만을 考慮하고자 한다.

政治的 結合을 前提로 하는 擴大段階의 經濟交流 担当機構는 먼 將來의 問題가 될 것이다.

第2節 概念의 定義

南北間의 經濟體制가 다르기 때문에 經濟의 몇가지 基本概念에 대한 定義를 내릴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經濟交流

註3) 国土統一院, 南北韓經濟交流의 諸問題點 및 細部對策, 1972.

12. p.23.

4) 上揭書 p.23.

經濟交流란 一般的으로 말하면, 國際收支表上에 計上되는 모든 項目의 去來를 總稱한다고 自由世界에서는 定義한다. 註5) 즉, 商品 去來, 用役去來, 贈與 그리고 資本去來를 다 包含하는 것이기 때문에 非政治的 去來의 大宗을 이룬다. 經濟交流에 대한 社會主義圈의 概念規定도 우리의 그것과 별 差異가 없다. 註6)

本研究에 있어서 經濟交流 類型을 다음 네가지로 分類한다. 註7)

(1) 商品去來

原料 土產品 特産物 中間材 및 完製品

(2) 資本協力

直接投資 또는 合作投資

— 프란트 또는 資源開發등 —

(3) 技術協力

專門 技術用役 協力, 勞動用役 協力

(4) 經濟的 便宜 및 利益協力

製造 生産活動의 協力

— 下請生産, 共同製造, 共同操業 —

第3 國市場에서의 販賣協力.

輸送 運輸手段 및 施設利用

— 航路開設, 港灣利用 鐵道, 道路 利用 —

註5) 中央日報, 1973. 1.: 1.

6) 張然浩, 美, 蘇貿易의 擴大와 經濟協力の 展望, 東西經濟 1972 年 9-10 月号 PP. 52 - 54

7) 南北韓經濟交流의 諸問題點 및 細部對策, 上揭書, P, 22

上記 4 類型의 經濟交流에는 經濟人的 交流도 당연히 포함된다.

2. 商品去來의 性格

南北間의 이루어 질 商品交易은, 形式的인 意味에서 對外貿易도 아니며 또한 순수한 意味에서 國內貿易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南北間의 商品交易은 그 自体의 固有한 規則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分斷國에 있어서 相對方의 承認問題와 關聯되기 때문이다.

東西獨의 경우, 이것을 地域間交易 (Inter Zonenhandel) 이라고 한다. 즉 西獨 DM와 東獨 IM의 兩通貨地域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商品 및 用役交換의 總體를 意味한다. 그런데 東西獨의 「地域間交易」에 대한 定義가 各已 다르다.

東獨에서는 1960까지는 「獨逸內에서의 交易」(Inner deutscher Handel) 이라고 表現했으나, 1960年 後부터는 「西獨 및 西柏林과의 通商」(Handel mit Westdeutschland und Westberlin) 이라고 表現하여^{註8)} 西獨과의 交易을 점차 對外貿易視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東獨에서는 經濟計劃 및 統計上에 있어서, 地域間交易을 對外貿易의 一部로서 取扱하며, 「地域間交易」을 「對外交易 및 內獨貿易省」(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 의 統制를 받도록 하고 있다.

註8) Horst Lamfrecht, 東西獨地域間交易의 發達過程, 1965. 東西經濟, 1973.3-4 月号 PP.65-66

反面에 西独에서는 地域間交易을 엄격히 國際貿易과 区分하고 있다. 이와같은 区分은 統計에 있어서나 政府管轄面에 있어서나 同一하다. 즉 地域間交易은 西独聯邦政府 經濟省 對外貿易局의 管轄下에 있지 않고 工業局 (Gewerbliche Wirtschaft) 의 所管으로 되어 있다. 西独에 있어서 地域間交易에 適用되는 法的 基礎는 오늘까지도 역시 占領聯合國이 制定한 「外換管理法」 (Devisenbewirtschaftungsgesetz) 에 의거하고 있다. 註9)

그러나 東独은 地域間交易을 爲한 法規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後述)

우리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南北統一을 志向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間의 商品交易을 國際貿易으로 規定할 수 없으며, 同時에 國內交易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對北交易을 「特殊形態의 交易」으로 規定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南北間 經濟交流과 東西獨의 地域間交易間에는 根本的인 性格의 差異가 註10)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註9) 上掲書, PP. 65-67

10) 東西獨 基本條約 前文에서 「國家地位問題를 포함한 兩獨의 基本問題에 대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見解 差에도 불구하고 단지 歷史的인 現實에서 出發하여, 또한 兩獨逸 國民들의 利益을 爲해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協力與件을 조성하고자 하는 希望에서 合議한다」 고 하여 統一問題와 國家의 地位問題에 異見이 있음을 明白히 하고 있다. 그러나 同條約 第4條에서 어느 한 國家도 다른 國家를 國際적으로 代表하거나 그 이름으로 行動할 수 없다는 前提에서 出發한다고 하고 있고 또 第6條에서, 兩獨은 兩國의 主權을 各己 그들 自身의 國家에 局限시킨다는 原則에서 出發한다. 그들은 對內外問題에 있어 各己 두 나라의 獨立과 主權을 尊重한다고 하고 있어 두 國의 國家를 承認하고 있다. (政經研究, 1973. 7月号, P. 132)

第3節 南北韓 經濟交流体制의 比較

經濟交流은 交流当事國의 産業構造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따라서 南北間의 産業構造에 어떤 体制上의 差異點이 있는가 하는 것을 分析 比較하여야만 經濟交流 또는 商品交易을 論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商品交易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必然的으로 去來當事經濟圈內의 産業構造가 貿易에 適合하도록 變化하는 것을 다 같이 받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北韓의 貿易制度는 對外貿易의 國家独占을 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資本主義諸國의 資本이나 商品의 輸出入에 依하여, 自體의 經濟가 攪亂當하는 것을 防止하고 對外貿易을 經濟建設에 더욱 密着시키려는 意圖때문이다.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南北經濟交流가 可能하려면 彼此間에 産業構造의 變動을 받아 드린다는 政治的 決定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南北經濟交流의 마지막 段階가 될 統合段階에 가야 實現 可能할 것이며, 그 以前段階까지는 名目上의 經濟交流에 그칠 可能性이 濃厚하다.

南北經濟交流에 있어서 交易은 하되, 自體의 産業構造 變化는 받아 들일 수 없는 경우가 存在한다면 그 交流은 純經濟的 交流가 아니라 政治的 交流에 不過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社會主義 經濟体制의 一般的인 貿易原則이다. 註11)

資本制經濟의 運營原理가 소위 價格機構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

註11) 소聯의 貿易制度(資料), 東西經濟, 1973. 3-4 月号, pp. 143-44.

다. 資本制 經濟에서의 經濟計劃은 價格機構를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計劃의 有無에 不拘하고 價格機構야 말로 資本制 經濟의 本質的 調節者라는 것을 確實히 認識하여야 對北經濟交流問題를 理解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資本制 經濟에서는, 生産 分配 및 流通이 모두 價格을 媒介로 한다. 따라서 貿易에 있어서도 價格比較가 一次的인 交流可能性을 가름하는 基準이 된다. 註12)

反面,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는 비록 價值法則이나 價格現象이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經濟의 調節者는 아니다. 社會主義 經濟에서는 모든 經濟行爲가 經濟計劃에 의거하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計劃 自体가 唯一한 經濟의 調節者인 것이다. 따라서 計劃과 実績間에 乖離가 發生하면, 計劃을 調整하는 것으로서 經濟가 움직이는 것이므로, 資本制經濟에서의 價格機構와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의 經濟計劃은 正對稱關係에 있음을 注目하여야 한다. 따라서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의 貿易은 經濟計劃 執行에 따른 物的 需給 밸런스의 變化를 補完하는 性質의 것이다. 社會主義 經濟에서의 貿易은 計劃 需給 밸런스上的 過不足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價格機構 作用에 따라서 企業化해 나가는 過程으로 나타나는 資本制 貿易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外貿易이 內包하는 制約要因을 計劃 技術的인 側面에서 뿐만 아니

註12) 李圭東, 北韓과의 貿易可能性을 打診한다., 中央日報, 1973.

라, 政治的인 側面에서도 充分히 考察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모든 分野에서 自主 自立의 精神을 基本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對外去來가 運營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自力更生の 旗幟下에 ……………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과 自立的 貿易構造的 樹立」을 基本方針으로 하고 있다. 註13)

社會主義 經濟에 있어서 貿易은 輸入을 前提로 輸出을 計劃한다. 經濟計劃遂行에 必要한 輸入品을 計算하고 그 代價支払 手段을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會主義 經濟의 對外去來에서 重視하여야 할 點은 무엇을 輸入하고자 하는가이다. 註14)

第2章 分断国 經濟交流의 先例

- 東西獨의 境遇 -

第1節 經濟交流의 段階

東西獨間의 地域間交易은 1945年 終戰 다음부터 시작되었고 Frankfurt 協定을 거쳐 1951年 9月 20日 이른바 伯林協定을 契機로 本格化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Frankfurt 協定 (1946 - 1951)

終戰이 되자 獨逸은 4大聯合國들에 의하여 분할 占領되었다. 戰後 復旧建設이 시작되자 交易은 처음에는 작은 地方을 中心으로 하여 成長했으며 終局에는 市, 郡, 州 및 占領地域 全域으로 점차 擴大되어 갔다.

本來 個人企業에 의해서 수행되던 貿易業은 1946年부터 政府當局의 所管으로 移轉되었으며 經濟 및 貿易協定의 締結에 의해 各州 및 東西獨間 交易을 促進시키려는 努力이 傾注되었다. 註 15) 그러나 最初의 蘇聯占領地域과 美國占領地域間의 交易量 規模는 매우 적었다. 1946年 2月에 締結된 協定은 작센州의 942톤의 砂糖 및 채소種子를 美國占領地域으로 輸出할 것을 許容함에 不過했다.

1946年 3月 31日에 蘇聯占領地域과 美國占領地域 사이에 最初의

註 15) 東西獨地域間交易의 發達過程, 前掲書, pp.69 - 70.

補償貿易協定이締結되었다. 東西獨間 商品交易에 있어서 最初의 劃期的인 發展은 다음과 같은 諸協定을 可能케 하였다. 즉 美國 占領地域 州政府 代表와 蘇聯占領地域의 商業 및 生必品調達庁 代表 사이에締結된 協定들로서 첫째 1946年 5月 15日에締結된 것으로 年中 每 4分期에 1,900 萬마르크(終戰前의 貨幣로)에 達하는 財貨를 交易하자는 協定과 1946年 6月 14日에 맺은 協定으로서 年中 每 4分期의 交易量을 5,000 萬마르크(RM) 水準으로 引上시킨 協定을 들 수 있다.

1946年 10月 1日에는 美國占領地域과 蘇聯占領地域間에 最初로 東西獨 交易에 관한 州政府의 商易協定이締結되었다.

仏蘭西와 蘇聯占領地域 사이에도 1946年 3月 2日에 第1次的으로 蘇·仏商易協定이, 그리고 1947年 3月 2日에 第2次 蘇·仏商易協定이 各已 締結되었다. 英國과 蘇聯占領地域 사이의 交易은 兩側의 軍政當局에 의해 맺어진 英·蘇商易協定을 통해 遂行되었다.

2 個地域 以上으로 分轄되었던 美·英 등 占領地域을 單一 占領地域으로 단든후 蘇聯占領地域과의 最初의 範圍한 經濟協定은 1947年 1月 18日에 민덴協定(Mindener Abkommen)에 의해 이루어 졌다. 註 16) 同 協定에 의한 1947年 1 / 4分期 財貨交易量은 2,900 萬 마르크(RM) 이었으며 나머지 세 分期의 그것은 1億 7,700 萬마르크 였다. 민덴協定 以後에 兩地域間에 締結된

註 16) 上掲書, pp. 71 - 72.

貿易協定으로서 우리는 1947年11月27日의 「伯林協定」(Berliner Abkommen)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同協定은 實際로 한번도 實行되지 못했다. 伯林封鎖 때문이었다. 1949年 伯林封鎖 解除 以後에도 同協定の 施行은 事實上 兩獨의 經濟를 完全히 分離시켰던 通貨改革으로 말미암아 完全히 不可能하게 했다.

1949年10月8日에 Frankfurt 協定이 締結될 때 까지 東西獨間에는 協定없는 狀態가 發生했다. 그 結果 商品交易은 結局 個人 企業體의 水準에서만 可能하였다. 東西獨에서 各己 獨立적으로 이루어 졌던 通貨改革과 兩獨間的 公正換率의 欠如는 무엇보다도 全獨逸의 商品交易을 위해 必要한 支払 및 決濟手段에 있어서 새로운 方式을 要請했다. (以前에는 舊獨逸貨幣로 計算)

이와같은 支払手段 및 決濟의 새로운 方式은 Frankfurt 協定에서 비로서 마련되었다. 즉 東西獨間 交易에 있어서 모든 供給商品 및 提供用役의 價格은 兩地域의 貨幣單位로 計算되었으며 雙方의 決濟를 위하여는 하나의 特殊한 貨幣單位가 마련되었는데 새 貨幣單位로서 西獨貨 1마르크의 價値에 해당하는 VE 라는 決濟單位(Verrechnungseinheit)制度가 採択되었다. 또한

Frankfurt 協定 第3條는 처음으로 東·西伯林의 商品交易에 關한 規定을 두었다. 註17) 1950年1月과 12月에 Frankfurt 協

註17) 上掲書, pp.73-74.

정의 補充契約으로서 「石炭協定」이 締結되었는데 이것은 後の 伯林協定の 一部를 構成하였다. 그後 Frankfurt 協定은 그 効力을 상실하였으나 雙方은 「地域間交易」의 廢止를 願하지 않았기 때문에 暫定交易協定을 맺자는 案에 合議하여 伯林協定 때까지 交易을 계속하였다. 註 18)

2. 伯林協定 (Das Berliner Abkommen)(1951 ~ 現在)

兩獨 「地域間交易」契約締結의 土台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伯林協定」으로 알려져 있는 1951年9月20日字 占領地域間 通商協定이다.

契約自体나 契約에 입각하여 設定된 여러가지 個別的인 規程은

<表 - 1 >

對東獨 西獨主要輸出品目

品 目	百萬決濟單位	構成比%
鐵 및 鋼 鐵 製 品	81	28
機 械 製 品	75	26
化 学 製 品 및 高 무 製 品	47	16
電 子 製 品	24	8
織 維 製 品	20	7
非 鉄 金 屬 製 品	10	3
生 鮮 및 生 鮮 製 品	10	3

資料: Horst Lambrecht, *ibid.*, p.73.

註 18) 上掲書, pp. 74 - 75.

<表- 2 >

对西独 東独主要輸出品目

品 位	百萬決濟單位	構成比 %
農 産 物	61	21
木 材 및 燃 料 用 木 材	28	10
織 維 製 品	80	28
鉍 物 性 油 類 및 石 炭	23	8
化 学 製 品	21	7
機 械 製 品	29	10
電 子 製 品 및 光 学 製 品	10	3
유 리 및 窯 業 製 品	10	3

資料：Horst Lambrecht, ibid., p.74.

그간 여러차례 与件이 變化함에 따라 그에 適應하도록 改正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雙方이 認定하고 있는 商品交易을 위한 法的 基盤이 되고 있다. 註 19). 政治的인 考慮에서 伯林協定은 當時의 通貨流通地域의 除限条件(부차規定)으로 締結되었다.

署名結果 伯林도 契約에 包含되었고 通商의 一定한 部門을 伯林 經濟가 차지하게 되었다. 本協定은 無期限으로 締結되었으며 필요

註 19) 西独聯邦政府 內独關係省, 東独政策에 관한 施政報告, 1971.
(번역物) 国土統一院, 1972.2. p.95.

에 따라 年末에 3個月 期限附로 解約 告知權이 있게 되었다. 註20)

伯林協定の 定式名稱은 다음과 같다.

[Abkommens über den Handel zwischen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DM-West) und den Währungsgebieten der Deutschen Mark der Deutschen Notenbank(DM-Ost)]

伯林協定の 重要한 決定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交易對象品目은 一定한 有効期間(通常 1年)의 適用을 받는 輸出入商品 目錄表에 規定되어 있어야 한다. 商品目錄表는 同協定の 核心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同協定の 變更할 수 없는 部分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雙方의 合議에 따라 商品目錄表를 變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特定の 경우에는 交易商品의 실링制限도 可能하다. 註21)

② 同協定에 添附되어 있는 商品目錄表는 두가지의 商品部類로 区分되고 있다. 그런데 두 部類에 該當되는 規定으로서 첫째, 輸出 및 輸入은 各己 均衡을 이루어야 하며, 둘째, 輸出 및 輸入의 支払決濟의 計算에 있어서도 既合議된 計定에 一致하여야 한다. 第1 商品部類에는 소위 硬商品(harte Waren)이 屬하며 이 部類는 오늘날 까지도 해마다 去來실링制를 嚴格히 固守하고 있다.

註20) 上掲書, p.95.

21) 伯林協定 第1條

第2商品部類에는 第1商品部類에 屬하지 않는 모든 商品이 包
含되며 실링制는 嚴格히 適用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商品別 区分을 通하여 西獨側이 노리는 目標은 雙方이
合議한 種類의 財貨가 相互 交換되도록 保障하려는데 있다. 註 22)

③ 東西獨通貨地域 사이의 商品交易의 遂行을 위하여 兩地域
의 交易担当 行政當局은 購入許可證明書를 發給한다. 註 23)

同許可를 西獨에서는 州政府 및 聯邦政府가 共同으로 担当한다.

④ 財貨의 納品은 雙方 當局의 決定의 考慮下에 締結된 雙
方去來者의 契約에 基礎한다. 註 24)

⑤ 雙務去來 및 補償貿易去來는 原則적으로 禁止한다. 이로써
東西獨間 交易은 처음으로 政府對 政府의 公認된 正式 契約에만
限定適用될 것을 要求했다. 反面 伯林協定 締結前까지는 民間 雙
務去來 및 補償貿易去來가 許容되었으며 特히 終戰 直後의 期間에
있어서 東西獨間 民間 商去來는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註 25)

⑥ 西獨에 있어서 輸出品의 價格統制는 利害에 예민한 各
經濟分野로 부터의 意見を 基礎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去來실링制 商品 및 非실링制商品 모두에 適用된다. 價格調整은
州政府 價格檢討委員會 (Preisprüfungsstelle) 에서 担当하고 있으나

註 22) 伯林協定 附錄 I, II, III, IV 參照

23) 伯林協定 第1條

24) 上同 第2條 第1項

25) 上同

실제로 그의 主務業務는 聯邦工業經濟庁이 管掌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西獨側의 價格水準은 一定한 추세를 견지했으나 東獨은 販賣의 경우 매번 價格을 引下했다. 즉 東獨生産物을 西獨에 더 많이 販賣하려 했기 때문이다. 註 26)

<表-3>

西獨의 對東獨貿易量

單位：百萬 DM

	輸 入	輸 出	合 計
1963	1,022	860	1,882
1964	1,027	1,151	2,178
1965	1,260	1,206	2,466
1966	1,345	1,625	2,970
1967	1,264	1,483	2,724
1968	1,440	1,432	2,872
1969	1,965	2,772	3,837
1970	2,064	2,484	4,548

資料：国土統一院，南北韓經濟交流의 範圍. 1972. p.29.

⑦ 雙方の 通貨地域 사이의 支払은 東西獨의 兩發券銀行에 대하여 全的으로 特定한 決濟方法의 規定에 의해 이루어 진다.

註 26) 東西獨地域間 交易의 發達過程, 前掲書, pp.76 - 77.

兩發券銀行은 相對方의 中央銀行에 決濟計定을 따로 各己 設定한
다. 註 27)

⑧ 西獨DM通貨地域의 對東獨 販賣에 對한 東獨側 購買者에
의한 모든 支払은 東獨發券銀行이 東獨貨 DM으로 東獨 價格水準을
基準으로 計算한다. 契約 協定에 規定된 東獨發券銀行으로 부터의
支払金額은 西獨聯邦銀行의 決濟計定の 貸辺에 記入토록 되어 있
다.

東獨의 對西獨 販賣의 경우에는 東獨의 發券銀行은 東獨貨DM
으로 東獨의 價格水準을 基礎로 하여 東獨의 納品者들에게 그 支
払을 이행한다. 또한 東獨發券銀行은 西獨聯邦銀行이 東獨發券銀行
의 VE(決濟單位)計定 貸辺에 所定の 金額을 記入하였다는 通報
를 받은 後에 契約에 協定된 金額을 西獨 聯邦銀行의 計定の 借
辺에 記入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規定은 西獨의 販賣 및 購入計定에 있어서도 特別한 價格
의 變動없이 同一하게 効力を 지닌다. 註 28)

⑨ 어떤 計定の 경우에 있어서도 雙方이 約定한 스윙幅을 超
過하여 負債가 不可避한 경우 일지라도 한쪽 편의 發券銀行은 他
發券銀行에 대하여 계속 借辺記入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註 29)

伯林協定은 위에서 說明한 商品交易 및 支払交換에 관한 規定以

註 27) 伯林協定 第 4 條

28) 上同 第 5 條 第 6 條

29) 上同 第 8 條

外에도 同協定の 主要部分이라고 할 수 있는 第18條에 明示되고 있는 一連의 約定도 包含하고 있다. 同協定の 具體적인 內容은 伯林協定の 附錄으로 添附되고 있는데 同附錄은 雙方의 中央銀行이 用役의 提供에 대한 支払規定에 대하여 合意한 事項을 包含하고 있다.

한편 伯林協定을 執行하기 위하여 兩獨이 마련한 交易의 法的 基礎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東獨側 -

① 1950年4月21日의 「獨逸對內交易의 保護를 위한 法令」 同法令은 東獨과 西伯林 사이에서 輸送되고 있는 財貨에 대한 商品販賣 許可證明書を 義務적으로 받아야 할 것을 規定하고 있고 東獨과 東伯林사이에서 輸送되는 特定한 財貨에도 適用된다.

② 1951年7月26日에 制定된 「獨逸內 商品交易의 保護를 위한 規程」은 東獨과 獨逸內 非東獨地域과 交易되는 모든 商品에 대하여 商品販賣許可證明書を 義務化하고 있다.

③ 1962年3月28日의 「關稅法」制定으로 위 두法規는 철폐 되었다. 註 30)

- 西獨側 -

① 西獨에 있어서 地域間交易의 法的 基礎는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聯合軍의 「外換管理法」에 근거하고 있다. 同法令의 執行을 위한 西獨側의 諸規程은 다음과 같다.

註 30) 東西獨地域間 交易의 發達過程, 前掲書. p.79.

② 1951年7月18日の「地域間 交易規程」은 地域間 交易에서 輸送되는 財貨에 더하여 商品販賣 許可證明書 및 商品購入許可證明書를 義務化시켰다.

③ 1958年8月22日에 制定된 「地域間 交易執行規程」은 地域間 貿易의 一般的 規定을 具体化하고 있다. 例를 들면 同規程은 聯邦行政当局에게 商品販賣許可證明書 및 購入許可證明書에 관한 權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同規程은 形式 執行管理 申請 許可 및 商品證明書의 書式등에 관한 諸細則도 包含하고 있다. 註 31)

第2節 經濟交流 担当機構

앞 序論에서 간단히 言及한 바와 같이 東獨은 「地域間 交易」을 完全한 對外貿易으로 看做하여 하나의 獨立된 省에서 이를 管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西獨側에서 伯林協定에 調印한 機構는 行政当局이 아니었다. 同協定과 商品目錄表는 地域間 交易信託管理所 (Treuhandstelle für den Interzonenhandel) 에 의하여 調印되고 作成되었다. 同管理所는 本来 西獨商工會議所의 機關으로서 1949年 가을에 Frankfurt 協定이 締結된 後 獨逸聯邦經濟省에 의해 同協定の 技術的인 諸節次를 担当하도록 새로히 設立되었던 것인데 註 32) 同管理事務所는 처음에는 Frankfurt 에 그러나 1950年1月에는 伯林으로 移轉되었다.

同管理所의 主要任務는 무엇보다도 輸出入商品의 目錄 決定이 었다.

註 31) 上同 pp.79 - 80.

註 32) 同管理所는 半官 半民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그러나 同管理所는 聯邦政府 특히 經濟省의 方針을 따라야 하고 그의 監督을 받는다. 또한 그의 人事도 聯邦政府에서 任命한다. 同管理所의 初代 聯邦管理人是 Kurt Leopold 博士이다.

管理所는 東独行政当局과의 諸協議事項을 決定함에 있어서 西独聯邦政府 및 伯林議會로 부터 全權을 委任받고 있다. 註 33)

伯林協定 第1條에 의거하여 購入許可 證明書를 發給하는 西独側行政当局은 工業製品인 경우는 聯邦工業經濟庁이 그리고 農産物에 대하여는 農業生産物貿易局이 各己 担当한다.

財貨의 國境線 通過를 위하여 特定한 貨物發送檢査所를 設置하며 檢査統制는 雙方의 稅關局이 担当한다.

商品의 關稅 適用에 있어서 兩獨은 地域間 交易를 內國關稅地域으로 看做하고 關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註 34)

東獨側에 있어서 輸出入商品目錄表의 管轄 및 最終 決定權은 「對外貿易 및 內獨貿易省」(Ministerium für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n Handel)이 行使한다. 註 35)

社會主義 經濟에서 貿易實務를 担当하는 機構는 貿易公團들이다. 公團은 各產業別로 조직되는데 一種의 國營貿易企業體이다. 이러한 貿易公團는 法人格을 가진 獨立經濟機關이다. 註 36) 東獨에서도 이러한 貿易公團들이 「對外貿易 및 內獨貿易省」의 監督下에 貿易實務를 担当한다.

伯林協定은 西獨의 DM과 東獨의 DM의 通貨圈의 交易으로 表示함으로써 政府承認이라는 外交的 딜레마를 회피하였었고 現在까지 여러차례 政治的 危機로 交易이 中斷되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 年末 東西獨基本條約의 調印으로 上記한 制約은 거의 解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東西獨間의 地域交易量은 크게 增加할 것이다.

註 33) 東西獨 地域間 交易의 發達過程, 前掲書, pp.75-76.

34) 上掲書, p.66.

35) 上掲書, p.76.

36) <資料> 蘇聯의 貿易制度, 東西經濟, 1973年 3-4月号 pp.143 - 150. 參照.

第3章 北韓의 貿易制度와 機構

第1節 北韓貿易의 發展過程

1. 對外經濟政策의 基本路線

(1)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

— 國家에 의한 貿易獨占, 國家計劃委員會에 의한 輸出入量의 確定 —

(2) 自立經濟路線

— 經濟建設에 必要한 物資의 輸入, 輸出入均衡 —

(3) 平等互惠原則

— 2 國間 바터制 實施 原則 — (北韓憲法 第34條 參組) —

(4) 社會主義世界市場 優先原則

— 對外貿易에서 社會主義 市場에 優先한다. 아세아 아프리카 非同盟諸國과 平等互惠原則에 立脚한 經濟關係 發展에 努力한다. 北韓과 經濟的 關係를 맺으려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모든 國家와의 貿易 및 流通 交流關係를 發展시킨다.^⑳ —

2. 北韓貿易의 變遷過程

(1) 戰後復舊 3 個年計劃期間 (1954—56)

動亂으로 因한 피해는 극심하였으므로 自力에 의한

註 (37)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2, P.419

復旧는 거의 不可能하여 소聯 中共을 비롯한 共產國들의 援助로 戰後復旧 3 個年計劃을 樹立 實施하게 됨에 따라 資本財 導入을 위한 財源의 確保策으로 貿易을 擴大하기 시작하였다.

소聯과 中共의 領域을 벗어나 1956 年頃에는 交易의 範圍를 全共產國諸國으로 擴大하였으며 一部 西方國에 까지 去來를 트게 되었다. 北韓의 輸出品目的 大部分이 主로 原料인 鐵鉍石 非鐵金屬 및 鉍物等이 었다.

(2) 第 1 次 5 個年計劃期間 (1957 - 1960)

5 個年計劃期間에 들어 와서 소聯을 비롯한 共產國의 援助가 줄어들어 貿易의 必要性이 더 커지게 되었다. 1958 年 6 月 金日成은 「朝鮮勞動党中央委 6 月全員會議」에서 輸出物資를 增産하고 「對外貿易을 各方面으로 發展시킬것」을 指示하였다. ③ 이를 契機로 하여 貿易擴大를 위한 소위 全人民的 運動을 強要하여 輸出物資 資源發掘運動을 벌여 輸出貿易을 改善 強化하였으며, 同年 9 月 對內外商業省을 改編 商業省과 貿易省을 新設하고 1956 年 6 月에 貿易銀行이 創設되었다.

1957 年以來 共產國의 援助削減으로 資金難에 봉착한 北韓은 貿易擴大를 꾀하여 1959 年과 1960 年사이에는 輸出品目中에서 原料는 減少되고 半製品 및 完製品의 比重이 漸次 增加하였다. ③

3. 7 個年計劃期間 (1961 - 70)

北韓은 社會主義 工業化를 이룩하기 爲한 7 個年計劃 進行에 따른 資金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同期間內에 보다 많은 輸出

註(38) 上掲書, P. 421

(39) 上掲書, P. 421

을 피하게 되었다. 同期間中 中·쏘紛争에 따른 北韓의 不利한 立場으로 因하여 北韓은 西歐와 日本등 自由世界에 대한 貿易擴大政策을 強力하게 推進하여 약간의 成果를 얻었다. 和蘭과 仏蘭西等 國家로 부터 프랜트類의 輸入을 보게 되었고 Europe 몇個 地域에 貿易代表部 또는 貿易事務所를 開設했다.

(4) 6 個年計劃期間 (1971 - 76)

現 6 個年計劃은 「社會主義의 物質的 土台와 技術的 土台의 一層 強化」와 「重勞動으로 부터의 解放 즉 三大技術革命」을 내세우고 있다. ④ 北韓國際貿易促進委員會 副委員長 金錫鎮은 1972 年 10 月 訪日時 北韓이 過去에 世界市場으로부터 完全히 斷切되어 있었음을 認定하고 이제는 社會主義國과는 물론 新生獨立國家 및 資本主義諸國과의 經濟交流도 活潑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6 個年計劃 수행에 따른 生産力 增大로 對 外貿易도 高揚될 것이 予見되며 輸出潛在力과 可能性이 크게 成長되었고 輸出商品의 量과 種類도 크게 增加할 것이고 따라서 輸入의 큰 增加도 予見된다고 하였다. ⑤ 6 個年計劃에 必要한 設備 資材 및 原料는 이미 社會主義國家 및 資本主義國家들과 長期 또는 個別契約에 의하여 充足시킬 것이 予見된다고 하면서 日本과의 貿易은 計劃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強調했다. ⑥

6 個年計劃期間에 北韓은 日本등 自由世界로 부터 相當數의 프랜트輸入이 予想되며 外貨需要를 充足하기 위한 輸出도 따라서 增加하게 될것이다.

註(40) 人民經濟發展 6 個年計劃에 대하여, 노동신문, 1970.11.10

(41) 張燃濤, 北韓·日本經濟交流의 現狀과 展望, 東西經濟 1973 年 3 - 4 月号, P. 13

(4.2) 上掲書, P. 14

3. 日本과의 經濟交流

1955年 11月 北韓과의 關係正常化를 推進하기 위한 「日朝協」이 日本에서 結成되었고 1956年 9月에 日中貿易形式에 의한 最初의 日·北韓貿易이 實現되었다.

1957年 9月 27日에 日朝貿易會와 北韓國際貿易促進委員會間에 「日朝貿易協定」이 締結되어 向後 1年間 雙方 輸出入規模 各己 600萬파운드로 하는 去來를 推進기로 合意하였다. 長崎의 中共旗事件을 契機로 日·北韓貿易이 一時 中斷되는 試練을 거쳐 1961年 4月 1日 當時 池田內閣은 「輸出貿易管理規則」의 改正에 의해 強制바터貿易地域에 北韓을 添加함으로써 北韓으로부터 貨物船이 日本에 直接 入港할 수 있도록 制限措置를 緩和하였으며 이로써 北韓과의 貿易去來에 日本은 最初로 法的인 承認을 賦與하게 되었다.

1962年에 들어와서 日朝貿易會를 中心으로 直接 決濟禁止措置와 強制바터制度 撤廢를 위한 運動이 크게 展開된 結果 日·北韓間 直接 決濟禁止措置 解除 및 強制바터地域으로 부터의 免除가 實現되었다. 이에 따라 貿易關係者의 往來禁止措置 解消와 雙方 銀行間 코레스締結 및 延払輸出이 当面問題로 대두된바, 코레스締結은

1963年 9月 三井銀行과 北韓貿易銀行間에 코레스가 締結됨으로써 貿易去來의 基礎적인 여러 條件이 일단 解決되기에 이르렀고 1964年 2月에는 協邦通商이 民間銀行을 通하여 北韓에 鋼材를 1年 延払輸出하기에 이르렀으며 1965년에는 3年延払輸出도 許容되었다.⁽⁴³⁾ 그 結果 1970年 現在 北韓·日本貿易의 当面問題로 남은 課題는

(43) 上掲書, PP. 15 - 16

貿易關係人士의 往來, 日本輸銀 融資에 의한 長期延払輸出 코콤 리스트 및 기타 諸制限撤廢의 實現으로 壓縮되었다.

貿易關係者의 相互往來가 시작된 것은 1972년에 들어서이며, 나머지 日本輸銀融資에 의한 長期延払輸出 및 코콤 리스트의 制約 기타 몇가지 制約等은 아직도 懸案問題로 남아 交渉對象으로 되고 있다.

北韓과 日本間의 貿易을 本格化함에 있어서 重要な 轉機를 가져오게 한 것은 1972年 1月 16日 부터 25日에 걸쳐 北韓을 訪問하였던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代表團과 北韓國際貿易促進委員會間에 締結된 「日朝貿易擴大合意書」이다.

同合意書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貿易을 점차적으로 擴大하여 1976년에는 總 1億 5,000萬 내지 2億과운드規模의 貿易을 實現한다.

② 北韓의 輸出品目은 工作機械, 銑鉄, 合金銅材, 非鉄金屬, 磁鉄鉏, 마그네시아 크링카, 水産物, 林産物, 化学製品, 被服製品 및 其他로 하며

③ 日本의 輸出品目은 除草劑工場設備, 自動車工場設備, 필립工場設備, 製紙工場設備, 原油精製工場設備, 에틸렌工場設備, 폴리에틸렌工場設備, 나이론紡織設備, 製鉄工場設備, 原油港灣設備, 写真機生産工場設備, 各種비아링, 各種化学製品, 電子計算機生産設備, 自動交換機具工場設備, 鋼材 및 其他로 한다.

④ 去來規模가 큰 對象品目은 8年以上의 延払條件으로 한다.

⑤ 雙方 交易의 円滿한 수행을 위하여 雙方政府는 輸出入許可
證을 適時에 發給토록 노력한다.

⑥ 合意書 履行을 위하여 東京과 平壤에서 商品展覽會를 開
催한다.

⑦ 技術交流 促進

⑧ 貿易代表團 技術者의 相互往來를 實現하기 위하여 雙方政
府에 이의 實現을 促求한다.

⑨ 相互性 原則에 立脚하여 雙方 首都에 貿易代表部를 設置
하고 政府로부터의 承認 獲得에 노력하기로 合意⁽⁴⁴⁾ 하였다. 이
合意書는 民間레벨의 合意에 지나지 않지만 田中系 重鎮議員인
久野忠治(現 郵政相)에 의하여 推進되고 있고 日, 中共貿易의
類型에 따라 發展하여 온 前例에 비추어 注目を 끌기에 充分하
다고 하겠다.

金錫鎮의 訪日中 發言에서 注目되는 것은, 日本政府가 政府間貿
易協定을 願한다면 이를 北韓이 檢討할 用意가 있다는 것과 日
本の 北韓에의 資本投資 合作投資등은 이를 拒否하겠다는 點들이나⁽⁴⁵⁾

第 2 節 北韓의 貿易機構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北韓에 있어어도 對外貿易은 政府
機關에 의하여 計劃 遂行된다. 現在 北韓의 對外貿易은 貿易部
의 管轄下에 國際貿易促進委員會 貿易公團들 그리고 貿易銀行의
4 個機關에 의하여 遂行되고 있다.

1. 貿易部

貿易部에는 部長 1名, 副部長 3名이 있고 本部에 10局1室

註(44) 上掲書, P. 17

(45) 上掲書, PP. 30 - 31

1個事業所가 있다. ④ 貿易部の 主要機能은 貿易에 관한 諸般政策決定과 指導 監督에 관한 것이다. 貿易部の 主要機構와 機能을 項目別로 整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機 構

<圖-1> 參照

(2) 機 能

① 諸外國과의 經濟關係를 發展시키고 貿易을 改善하기 위한 諸方案의 立案과 執行

② 管轄下에 있는 貿易業務의 管理와 指導

③ 外國貿易에 관한 計劃作成과 執行의 指導

④ 外國과의 通商協定案의 作成과 執行上의 指導

⑤ 貿易分野에서의 通貨, 關稅政策에 관한 諸問題의 檢討

⑥ 輸出入許可證의 交付

⑦ 輸送, 備船, 貨物取扱業務의 指導

⑧ 關稅業務

⑨ 海外市場 및 外國의 經濟 貿易政策의 研究등이다. ④

貿易部の 海外機關의 役割을 하는 機構가 通商代表部이다. 通商代表部가 設置되지 않은 國家에는 通商代理部를 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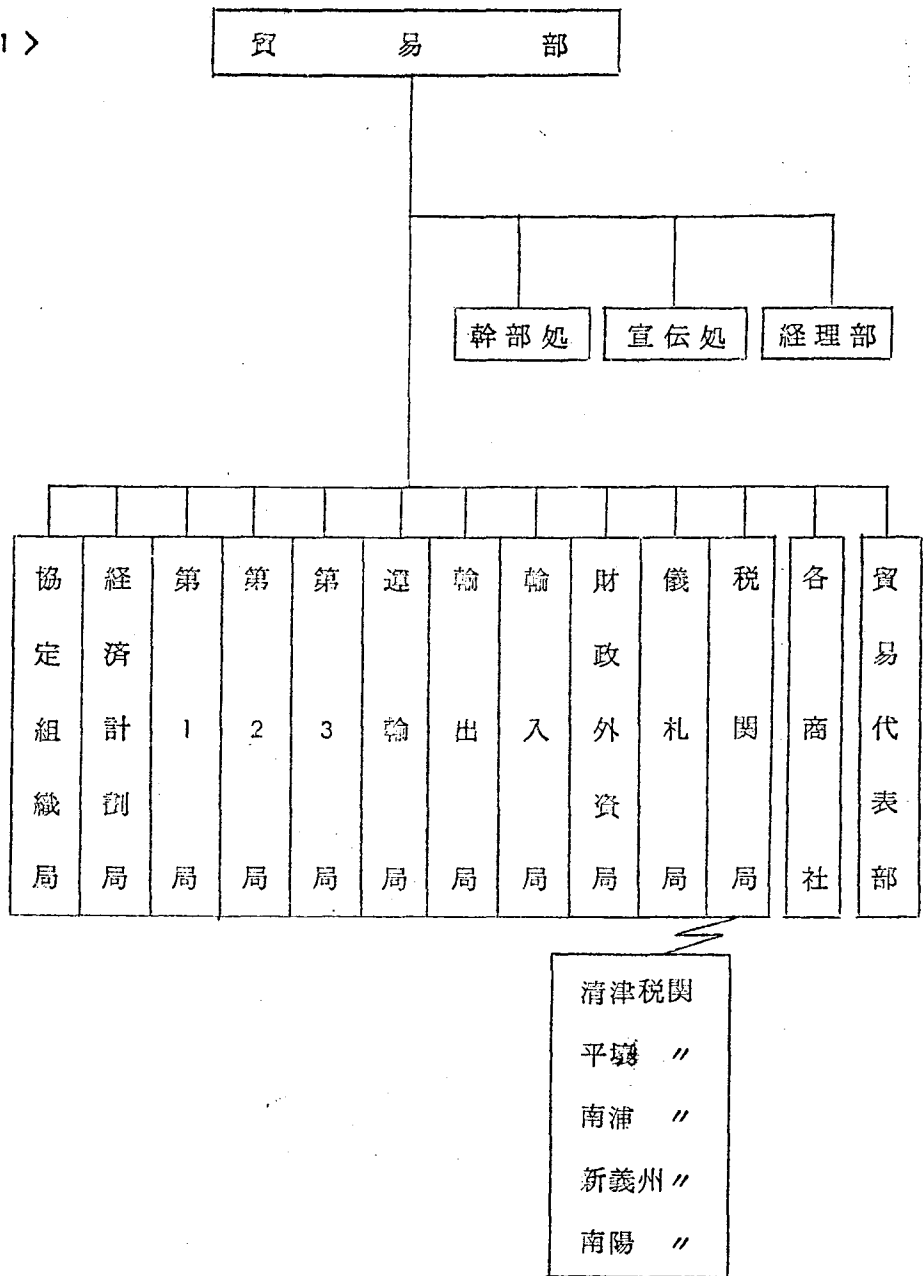
通商代表部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친레等地에 設置되어 있다 ④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註(45) 北韓 經濟統計集, . 前掲書, P. 430

(47) <資料> 소聯의 貿易制度, 東西經濟, 1973.3-4 月号
PP.144 - 45(소聯對外貿易省의 機能)

(48) 張燃浩, 北韓의 對外貿易과 受授現況, 東西經濟 1972.
11 - 12 月号, P. 11.

<圖-1>



資料：北韓經濟統計集 P. 740

① 北韓의 이름으로 契約을 締結한다. 駐在國과의 通商協定에 의하여 通商代表部가 設置된다.

② 駐在國과의 貿易을 調整하고 通商關係를 증진한다.

③ 海外市場에 있어서 自主的 行爲가 許可되어 있는 諸機關의 通商業을 調整 監視한다.

④ 對北韓 商品輸出許可書를 發給

⑤ 駐在國에서 展示會 및 見本品에 관한 情報을 入手한다⁽⁴⁹⁾
上述한 機能을 갖고 있는 通商代表部는 治外法權을 갖는다.

2. 國際貿易促進委員會

國際貿易促進委員會는 北韓과 外交關係가 없는 非共產國家와의 貿易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同委員會는 內容的으로는 政府機關이지만 對外的으로는 民間團體의 形式을 갖추기 위해서 選舉되는 委員 및 名譽委員으로 構成되고 있다. 즉 北韓의 貿易公團들과 其他 貿易機關 및 그 關係者들 가운데서 選出되고 있다. 同委員會의 指導機關은 全員會議과 常務委員會로 되어 있다.⁽⁵⁰⁾ 소聯을 비롯한 다른 社會主義國家에서는 이 機關을 商業會議所 (Chamber of Commerce)라 稱한다.

商業會議所의 一般的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外國의 實業界 社會界와의 交流

② 外國의 貿易代表團 經濟代表團의 招請 自國代表團의 海外 派遣

③ 外國의 市場狀況, 貿易擴大를 위한 資料의 研究 및 總括

註 (49) 소聯의 貿易制度 上揭書, PP. 146-47 이것은 소聯의 例를 引用한 것이다.

(50) 張燃諾, 上揭書, P. 10

④ 外國의 經濟 및 貿易事情의 紹介

⑤ 自國의 見本市場 展示會, 國際見本市場이나 國際展示會를 自國內에 開催

⑥ 自國의 發明 및 工業製品의 特許나 自國의 企業商標의 登錄에 關한 海外業務, 그리고 外國의 發明 및 工業製品의 特許나 外國의 企業商標의 登錄에 關한 業務를 遂行한다.

⑦ 自國 輸出商品의 原產地證明을 發給한다 ①

以上과 같은 機能을 갖는 商業會議所는 外國商社가 처음으로 共產圈의 貿易公團과 接觸을 시작할 경우에 특히 有效한 도움을 준다.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內에는 貿易仲裁委員會가 附設되어 있다.

同委員會는, 外國貿易에 直接 參加하지는 않고 外國貿易機關 또는 商社와 北韓貿易機關 및 貿易公團間에 實務的인 連結을 맺어 주는 機關이다.

3. 貿易公團

北韓의 貿易實務를 担当하고 있는 機關인데 資本主義體制에서 보면, 一種의 國營貿易會社이다. 貿易公團은 法人格을 가진 獨立經濟機關이다. 北韓의 貿易公團은 이를 管轄하는 國家機關에 따라 貿易部 管轄公團과 對外經濟事業部 管轄公團으로 나뉜다. 北韓은 約 20 個의 貿易公團이 있다. 一定한 種類의 商品을 取扱하는데 原則적으로 1 個의 公團이 있다. 貿易部 傘下의 公團은 아래와 같다.

註. (51) 소聯의 貿易制度, 前掲書, PP. 150-51 商業會議所의 機構表는 上掲書 P. 150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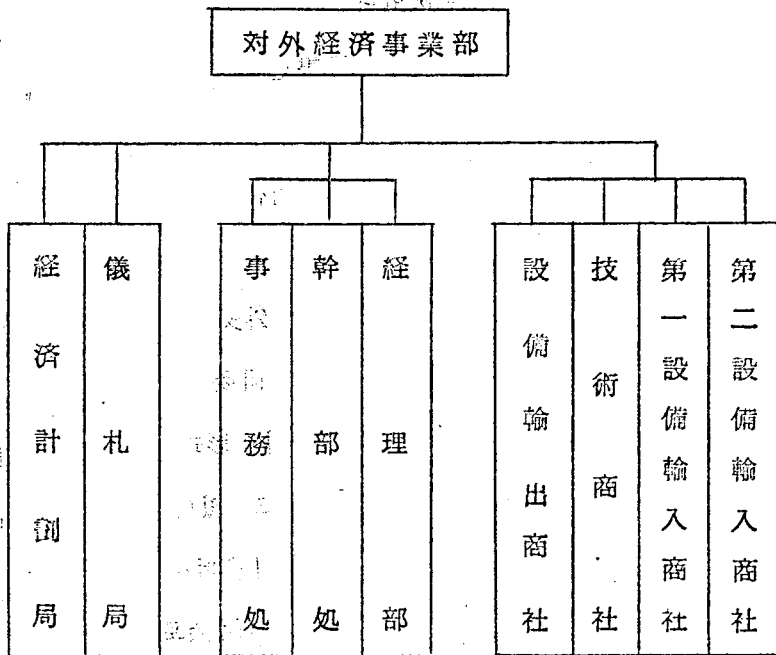
- ① 朝鮮機械輸出商社
- ② 朝鮮機械輸入商社
- ③ 朝鮮鈹物輸出商社
- ④ 朝鮮金屬製品輸出入商社
- ⑤ 朝鮮化學製品輸出入商社
- ⑥ 朝鮮纖維製品輸出入商社
- ⑦ 朝鮮食料品輸出入商社
- ⑧ 朝鮮日用品輸出入商社
- ⑨ 朝鮮糧穀輸出入商社
- ⑩ 朝鮮平壤協同貿易商社
- ⑪ 朝鮮中外協同貿易商社
- ⑫ 朝鮮大型貿易商社
- ⑬ 朝鮮協同貿易商社
- ⑭ 朝鮮出版物輸出入商社
- ⑮ 朝鮮映画普及社

對外經濟事業部와 그傘下 4個 公團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部 管轄公團은 주로 프랜트類의 輸出入을 担当한다는 特徵을 갖고 있다.

다음에 貿易公團의 權限을 살펴 본다. 貿易公團은 定款에 定한 範圍內에서 商品의 販賣 또는 購入契約을 締結하며 債權 債務를 担当한다. 公團의 債務에 대하여 國家는 責任을 지지 않으며, 公團의 物的 責任에 대하여서는 自由圈의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

의 그것과 거의 同一하다. 그리고 自由圈의 貿易業者는 公團의 信用程度 財政狀態等を 念慮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 共產圈의 貿易公團은 絶대로 破産하지 않는 会社라고 생각 해도 좋기 때문이다. ⑫ 公團은 또한 어음을 發行하며, 어음을 받을 수 있다. ⑬

< 圖 - 2 >



資料：北韓經濟統計集 P. 731

4. 貿易計劃과 貿易業務制度

社會主義國家들의 貿易制度는 거의 同一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蘇聯과 東歐諸國의 貿易計劃과 貿易業務制度를 紹介한다.

註 (52) 上掲書, P. 149.

(53) *ibid.*, 蘇聯의 貿易公團 機構表는 P. 149 参照, 北韓의 貿易公團 機構表도 이와 類似하리라 생각된다.

(1) 全体經濟計劃 構成部分으로서의 貿易計劃

共產圈의 外國貿易計劃은 全体經濟計劃의 한 構成部分이 된다.

例를 들면 6個年貿易計劃은, 輸出入의 數量 및 構成, 輸出相對國을 決定한다. 6個年計劃의 範圍內에서 年次計劃이 定하여 지지만 이는 前年度의 計劃遂行実績과 中期計劃目標를 바탕으로 하여 決定된다. 必要한 경우, 海外市場 狀況의 變化나 國民經濟計劃의 修正이 要請될 때에는 이에 應하여 貿易計劃도 變更된다.

(2) 貿易計劃의 作成方法

貿易計劃作成 節次는 6個年計劃을 中心으로 우선 國家計劃委員會가 一定期間의 外國貿易의 發展目標와 方向을 定하여 貿易省에 示達한다. 貿易省은 予定 購買日程表를 作成한다. 이 表는 各公團뿐만 아니라 適時에 資金을 供給할 수 있도록 貿易銀行에도 下達된다. 公團은 이것을 土臺로하여 自己担当의 商品에 대한 年度別 및 半年度別 全体輸出入計劃을 作成한다. 輸出에 대하여 公團은 計劃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가의 如否를 確認하기 위해 生産工場 側과 協議한다.

一但 工場側이 이計劃案에 同意하면 公團과의 契約에 따라서 納品義務를 진다. 이러한 節次가 끝나면 公團의 貿易計劃은 貿易省에 보내 진다. 貿易省의 各局 部에서 必要한 修正을 한 다음 國家計劃委員會에 提出된다. 同委員會는 他省의 生産計劃이나 投資計劃과 調整하여 國民經濟計劃의 一部로서 作成한다.

(3) 輸出入目標 決定의 諸條件

輸出入計劃을 立案할 때 各種 要素들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輸入에 대하여 計劃担当者는 生産 建設 및 國內商業의 供給을 위한 需要量을 測定하여야 한다. 特히 輸入의 經濟的 效果를 考慮한다. 輸出目標을 策定할 때 自國商品에 대한 外國의 需要를 綿密히 分析한다. 輸出計劃의 規模는 輸入計劃의 規模에 依存한다. 貿易計劃은 貨幣收支計劃이 國別로 그리고 通貨地域別로 均衡되도록 樹立된다.

(4) 貿易公團의 貿易業務

公團의 輸出入活動은 公團의 顧客인 政府의 省庁, 企業, 其他機關의 依賴에 따라 즉 Commission Basis 에 의하여 行하여진다. 一般的으로 公團의 輸出入契約에는 貿易省의 輸出入許可證을 必要로 한다. 輸入許可證을 發給받기 위한 不可欠의 條件은 그 輸入이 計劃에 合致되는가 하는데 있다. 貿易計劃에 따라 外國으로 부터 어떤 商品이나 設備을 購入할 수 있는 許可를 얻게 되면 担当公團에 輸入商品, 輸入量 및 金額을 表示하여 輸入을 要請하게 된다. 이러한 輸入注文에 應하여 公團은 最適 供給者를 揀한다.

公團은 注文處의 同意없이 輸入條件을 變更시킬 수 없다. 貿易省은 各公團이 作成한 全體貿易計劃 및 短期去來計劃에 따라 公團의 活動을 指導 監督한다. 이計劃에는 公團別 去來量 및 金額, 國家로 부터 받는 信用總額과 予想純益이 定하여진다. ⑤

第3節 予想되는 北韓側 經濟交流 担当機構

1957年107日, 當時 北韓의 對內外商業相은 南北間通商關係를

設定하려고 大韓民國 商工部長官에게 咨翰을 送達한일이 있었다. ㉔

그러나 7.4 共同宣言과 南北調節委員會의 発足으로 北韓은 南北 經濟交流를 東独과는 달리 對外經濟交流(外國과의)로 看做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商品交易 担当機構로서 北韓 貿易部가 나설 可能性은 희박하다.

北韓의 對南經濟交流担当機構를 政策立案機構, 協商機構, 執行機構 및 行政支援機構로 区分하여 어떻게 構成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予測하여 보고자 한다.

北韓의 經濟交流 立案機構에 대한 考察은 本研究와 別로 關係가 없으므로 省略한다. 決定된 經濟交流案을 우리側과 協商할 協商機構로서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經濟分科委員會를 내세울 可能性이 濃厚하다. 北韓側은 經濟分科委員會에서 4가지 類型別 經濟交流 全般을 協商하고자 主張할 것이다.

여기에서 妥結된 南北間 交流事項을 執行할 機構로서 北韓은 貿易公團을 活用하고자 할 것이다.

南北交易만을 專担할 새로운 貿易公團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北韓의 貿易部 및 關係部가 南北經濟交流에 있어서 該當部分에 대한 行政支援機構役割을 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는 南北經濟交流에 直接 나서지 않을 것으로

註(55) 東西經濟, 1972.11 - 12月号, P. 74

觀測된다. 왜냐하면, 韓國을 北韓은 外國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結論적으로, 北韓은 南北經濟交流를 위하여 새로운 行政機構를 當
分間 만들지 않을 것이다.

第4章 段階別 南北經濟交流 担当機構 (案)

위 3 個章에서 南北經濟交流를 担当할 우리側 機構를 構想하기 위한 여러 가지 條件들을 分析 考察하였다. 이미 序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南北經濟交流가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政治的 統合을 前提로 하지 않는 限 交流의 範圍와 量은 極히 微々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南北經濟交流 担当機構를 構想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거창한 새 機構를 만들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는 단순한 第3 國과의 經濟交流와는 다르고, 또한 極히 微妙한 南北對話의 一環이기 때문에 他分野의 南北交流와 마찬가지로 그 担当機構를 構想함에 있어서 高度의 慎重性을 기할 必要가 있다.

다음에 韓國側의 經濟交流政策立案機構, 經濟交流協商機構 및 妥結된 交流事項을 執行할 執行機構에 대하여 論하여 보고자 한다.

第1節 經濟交流政策樹立機構代案

< I 案 > 國土統一院 活用方案

國土統一院의 現職務는 「國土統一에 관한 問題를 綜合的으로 調査 研究하고 統一의 方案과 統一後의 諸般政策 및 國土統一에 관한 教育 弘報 宣傳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⁵⁶⁾고 되어 있다.

註 56) 大韓民國 政府組織法 第 20 條 3 參照 및 同大統領令 第 1 條 (職務)

当初 国土統一院은 1970 年代末에 있을 統一論議에 對備하기 위한 組織環境 속에서 순수한 調査 研究機關으로 發足되었다.

그러나 7.4 共同宣言以後, 그의 組織環境은 크게 變化되었다.

즉 豫想 보다 훨씬 앞당겨 南北對話가 시작된 것이다.

組織理論에 의하면, 組織環境이 變하면 組織目標도 따라서 變하여야 한다. 57)

組織目標은 環境의 要求, 環境으로 부터의 抵抗, 組織內的 要求, 組織의 過去業績 및 指導者의 個人的 慾望등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지만 58) 国土統一院의 경우, 組織目標의 變更에 決定的 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은 「環境의 要求」일 것이다.

国土統一方案에 관한 調査 研究機能 뿐 아니라, 統一政策을 立案하는 機能이 国土統一院에 주어져야 한다고 思料된다. 南北對話는 방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長期間의 協商을 必要로 한다. 따라서 政治 軍事 外交 經濟 및 社会文化分野 中에서 重要하고 深刻성을 띠게 될 政治 軍事 및 外交分野를 除外한 經濟 및 社会文化分野의 南北交流方案을 立案하는 機能을 우선 国土統一院에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南北經濟交流가 實現된다고 하더라도 그 展望은 극히 形式的인 去來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 있어, 国土統一院에 經濟交流政策 立案機能을 부여하는 것은 妥當性을 갖는다 하겠다.

註 57) 趙錫俊, 組織論, 法文社, 1973, 第 1 章 環境과 組織, 參照

58) 趙錫俊, 上揭書, p.39

国土統一院에 그와 같은 機能을 부여하려면, 政府組織法과 同大統領令을 改正하여야 한다. 目標의 設定 또는 再設定過程은 그 自体가 하나의 意思決定 過程이기 때문에, 「環境으로 부터의 抵抗」이 이때에 問題가 된다. 즉 国土統一院에, 위에 言及한 統一政策 立案機能을 부여하려 할 때, 現在 南北對話에 關여하고 있는 政府 構關 相互間의 機能 再配定에 있어 抵抗이 나타나리라고 豫想된다.

< II 案 > 南北經濟交流對策委員會案 (假稱)

現政府機構의 變動없이 統一政策 및 經濟担当部처의 實務者들로서, 「南北經濟交流對策委員會」(假稱)를 構成하여 南北經濟交流政策을 立案케 하는 方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委員會에서 交流政策이 立案되면 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이를 南北調節委員會 共同委員長에게 示達하는 節次를 取할 수 있다. 이 委員會는 靑瓦台 經濟担当特別補佐官을 委員長으로 하고 委員으로는 經濟企劃院 經濟企劃局長, 商工部 商易局長, 国土統一院 經濟政策担当官 및 中央情報部 關係官 등으로 構成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經濟交流對策委員會案은 그 組織에 있어서 環境으로 부터의 抵抗이 적을 것이며 運營에 있어서도 靑瓦台內에 設置되는 關係로 順調로울 것이 豫想된다.

第2節 協商機構

南北調節委員會 經濟分科委員會를 設置키로 合意한 이상, 經濟分科委員會 以外の 機構가 南北經濟交流案을 提案하고 協商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妥當性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두어차례 指摘하였다.

經濟交流政策 立案機構에 의하여 立案決定된 交流方案을, 北韓側에 提案하고 이를 協商할 經濟分科委員會는 商品去來, 資本協力, 經濟的 便宜 및 利益協力과 技術協力등 全交流類型을 망라한 協商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할 것이다.

經濟分科委員會는 以上과 같은 協商機能以外에 南北經濟交流中에 나타날 諸紛爭을 解決할 經濟交流仲裁機能도 同時에 갖지 않으면 안된다.

앞 序論에서 商品去來를 例로 들어, 南北調節委 經濟分科委員會가 經濟交流問題를 協商할 경우, 다루어야 할 協商內容에 대하여 이미 言及하였다.

第3節 執行機構

政府機構인 政策立案機構가 經濟交流政策을 立案하면 이것을 北韓側과 調節委 經濟分科委員會가 協商하게 되며 合議된 交流事項을 執行할 機構가 다음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 執行機構는 民間經濟團體들이 担当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民間主導型 自由經濟體制의 優越性を 誇示할 수 있기 때문이다.

共産圏 국가가 自由陣營 國家와 貿易協定을 締結하여 通商하는 경우, 一般적으로 交易相對는 自由圏의 民間業체가 된다. 59)

다음에 經濟交流類型別로 執行機構를 論하여 보고자 한다.

< 圖 - 3 > 執行機構表

類 型 別	執 行 機 構 名
商品去來	韓國貿易協會
技術協力	韓國科學技術研究所
資本協力 經濟的便宜 利益協力	全國經濟人聯合會

1. 商品去來担当 執行機構

南北間의 商品去來를 担当할 執行機構로서는 社團法人 韓國 貿易協會가 適切하리라고 본다.

韓國貿易協會 定款에 의하면, 貿易協會는 貿易振興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하도록 되어 있다.

- ① 貿易에 관한 行政官廳과 會員間의 連絡.

註 59) 스웨덴, 노르웨이 貿易協定 (1971 ~ 75) 第 3 條 參照,
東西經濟, 1972 年 5 ~ 6 月號, p. 147

- ② 貿易에 관한 斡旋指導 및 施設
- ③ 貿易에 관한 代行業務
- ④ 貿易에 관한 諸外國과의 連絡 및 宣傳
- ⑤ 貿易에 관한 調査 및 研究
- ⑥ 貿易에 관한 建議 및 其諮問에 대한 答申
- ⑦ 貿易經濟에 관한 定期刊行物 發行事業
- ⑧ 輸出品의 生産獎勵
- ⑨ 其他 貿易振興에 必要한 事業⁶⁰⁾으로 되어 있다.

위의 事業項目중, 貿易에 관한 斡旋指導 및 貿易에 관한 代行業務 등 管掌事業에 근거하여 貿易協會는 傘下會員을 代行하여 北韓側 去來先이 될 貿易公團과 商品去來에 관한 契約을 締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品目の 商品去來에 있어서, 單一한 北韓側 貿易公團과 商談함에 있어서, 우리側 여러個의 業체가 相互 競合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不利할 것이다. 따라서 貿易協會가 南北間의 商品去來에 있어서 傘下會員 또는 輸出組合을 代表한 執行機構로서 活動하여야 마땅하다.

貿易協會가 北韓側과 商品去來에 관한 契約을 代行締結하고 다음에 去來業체를 指命하는 節次를 밝게 되면, 對北去來에 있어서 競合과 混亂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註 60) 韓國貿易協會 定款 第 2 條

2. 技術協力 担当機構

南北間の 技術協力を 担当할 執行機構로서, 社団法人 韓國科學技術研究所 (K I S T)를 생각할 수 있다. K I S T의 設置目的은, 그 定款에 의하면, 科學技術 및 工業經濟에 관한 試驗研究 및 調査를 綜合적으로 遂行하고 그 成果를 普及하므로서 産業技術開發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⁶¹⁾고 되어 있다.

北韓과의 技術協력을 K I S T가 担当하려면 위의 設置目的을 改正하여야 한다.

K I S T가 提供할 수 있거나, 必要로하는 技術以外的 技術協力分野에 대하여는 關係業체를 代行하여 北韓側과 協力契約을 締結할수 있을 것이다.

3. 資本協力, 經濟的 便宜 및 利益協力 担当執行機構

社団法人 全國經濟人聯合會가 이 分野의 南北交流를 担当할 執行機構가 될 수 있다. 全經聯 定款에 定한 管掌事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産業經濟 各部門의 聯合으로 經濟人의 自主力量을 굳건히 하며, 經濟政策, 行政 및 諸法規의 改善에 關하여 公正한 意見을 關係機關에 具申 實現에 努力함.

② 國際經濟機構 및 外國經濟團體와 긴밀한 連繫를 期하며 海外進出과 經濟協力の 強化를 위하여 民間經濟外交를 積極 展開함.

註 61) 韓國科學技術研究所 定款 第 2 條

③ 經濟人들의 知識 經驗 資本을 動員하여 産業의 開發, 企業經營의 合理化, 科學技術의 振興을 促進함.

④ 國內外經濟에 관한 諸問題의 調查研究, 文獻 資料 統計의 蒐集 編纂 및 이에 관련된 調查機關과의 提携와 情報交換을 圖謀하며 아울러 產學協同 俱現에 이바지함.

⑤ 社會 各界와의 紐帶를 強化하고 企業의 社會性을 暢達하며 나아가 健全한 經濟社會風土의 實現에 努力함.

⑥ 前 各号外에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⁶²⁾으로 되어 있다.

위의 管掌事業項目에는 資本協力 經濟的 便宜 및 利益協力에 관한 規定이 없기 때문에, 全經聯이 이 分野의 執行機構가 되려면 그 設置目的과 事業을 改正하여야 한다.

商品去來에 있어서 貿易協會가 担当하게 될 機能과 마찬가지로 資本 및 利益協力分野에 있어서 全經聯도, 傘下會員을 代行하여 北韓側과 協力契約을 締結한 다음 協力業體를 指名하는 節次를 밟아야 할 것이다.

大韓貿易振興公社는 南北經濟交流에 直接 參加하지는 않지만, 北韓의 市場調查와 우리 商品의 對北韓 宣傳業務에 있어서 執行機構들을 協調하여야 할 것이다.

同公社 定款 第22條 4項에 의하면 貿易에 관한 박람회 展示會의 開催 또는 이에 參加하거나 그의 斡旋業務가, 大韓貿易振興公社

註 62) 全國經濟人聯合會, 定款 第4條

의 所管事項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對北商品展示會를 開催
할 경우 同公社는 貿易協會를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第 5 章 經濟交流 行政支援 機構

南北經濟交流를 規制할 諸法規를 새로 만드는가 아니면 現行 對外 經濟交流 關係法規를 準用하는가에 따라 南北經濟交流를 支援할 行政機構가 달라지게 된다.

本研究에 있어서는 後者の 경우를 前提로 하여 南北經濟交流를 支援하게 될 行政機構를 論하고자 한다.

우리는 東獨의 경우처럼 對西獨交易을 規制할 諸般法規를 새로 制定할 것이 아니라 現行關係法規를 準用하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본다.

第 1 節 商品去來 支援 機構

貿易去來法에 의하면 ① 共產地域으로의 輸出과 그 地域으로 부터의 輸入, ② 共產地域에서 消費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物品의 輸出, ③ 共產地域에서 生産된 物品의 輸入은 禁止되고 있다. 63) 그러나 同但書에 「法律로서 定하는 者가 輸出 또는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어 對北韓 商品交易의 길은 열려있는 것이다.

對北商品交易의 경우, 第 1 次的인 行政支援機構는 商工部이다.

貿易去來法에 의하면 우선 輸出入業의 許可를 商工部가 管掌하며⁶⁴⁾

註 63) 貿易去來法, 第 2 條 ① 項

64) 同法 第 3 條

또한 業者가 物品을 輸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商工部長官의 許可 또는 承認을 얻어야 한다. 65) 商工部長官은 必要한 때에는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輸出入業者, 物品売渡確約書發行業者 또는 外貨獲得을 위한 物品을 生産하는 者の 營業所 事務所 또는 工場, 車庫 기타 필요한 場所에 臨하여 帳簿, 書類 기타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66)

輸出入品目の 種類에 따라, 農水産部, 保健社会部등 關係部処의 추천이나 承認을 받아야 하므로, 이들 部処도 支援機構가 된다.

南北經濟交流가 實現될 때, 決済方法이 어떻게 着落될런지 모르지만 財務部 外換銀行등이 決済를 위한 支援機構가 될 것이다.

東西獨의 地域間交易에서는 関稅가 賦課되지 않지만 南北商品交易에 있어 関稅가 賦課되게 되면 関稅廳도 主要한 支援機構가 된다.

또한 商品의 輸送方法, 引渡場所에 따라 他部処들도 支援機構가 될 수 있다.

北韓의 經濟事情, 市場調査등 調査研究事業은 国土統一院, 中央情報部 및 學界에서 担当하게 된다.

南北經濟交流에 直接 參加하지 않는 經濟団体들, 例를 들면 大韓商工會議所등도 支援機關이 되어야 할 것이다.

第2節 其他協力 支援機構

資本協力에 있어서는 經濟企劃院이 行政支援機關이 되어야 할 것

註 65) 同法 第6條

66) 同法 第28條

이다. 技術協力の 경우에는 經濟企劃院과 科學技術處가 支援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經濟的 便宜 및 利益協力은, 協力內容에 따라 關係部處의 支援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諸行政支援機構들의 綜合的 調整方案은 經濟交流政策立案機構에서 立案하여 大統領의 裁可를 얻어, 調整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第 6 章 結 論

南北經濟交流의 性格은 外國과의 交流도 아니고 國內交流라고도 볼 수 없는 「特殊形態의 交流」임을 序論에서 指摘하였다.

南北經濟交流가 實現되더라도 當分間 그 範圍와 量은 極히 微微한 形式的인 交流에 그칠 可能性이 있음을 展望했다.

따라서 南北經濟交流를 專担할 새로운 行政기구를 創設한 論理的 妥當성이 없음을 볼 수 있었다. 現實的 與件을 감안하여 南北經濟交流를 担当할 段階的 機構로서, 本 報告書는 經濟交流政策立案機構, 이를 提案하고 協商할 機構 및 妥結된 交流事項을 執行할 機構로 区分하여 考察하였다.

끝으로 南北經濟交流를 支援하게 될 行政機構들 그리고 學界 및 民間團體에 대하여 論하였다.

南北經濟交流政策立案機構로서 國土統一院을 活用하는 方案과 假稱 南北經濟交流對策委員會 構成方案을 提示하였는데, 後者가 組織理論으로 볼 때, 環境으로 부터의 抵抗이 적으리라고 展望했다.

經濟交流案을 北韓側에 提議하고 이를 協商할 機構로는, 南北調節委員會, 經濟分科委員會가 가장 適切한 機構라는 것을 指摘했다.

經濟分科委員會 以外的 機構가 協商機構로 되는 것은, 論理的으로 妥當성이 적음을 보았다.

合議된 交流事項을 執行할 機構로서, 交流類型別로 韓國貿易協會, K I S T 및 全國經濟人聯合會를 指摘했는데 이러한 民間經濟團體들

이 執行機構로 活動하여야만 民間主導型 自由經濟体制의 優越性を 北韓側에 誇示할 수 있음을 論하였다.

南北經濟交流를 支援할 行政機構를 論함에 있어서는, 現行 經濟交流關係法規를 準用하는 것을 前提로 하였다. 그것이 南北經濟交流를 規制할 새 法規體系를 만드는 것 보다 有利함을 指摘했다.

南北經濟交流를 担当할 우리側의 機構를 構想하기 前에 本報告書에서는 分断國의 經濟交流의 先例가 되는 東西獨의 地域間交易에 대하여 考察했다.

다음에 北韓의 貿易政策, 貿易制度 및 貿易機構를 考察한 다음, 南北經濟交流에 있어서 北韓側이 들고 나올 經濟交流担当機構에 대하여 豫測하여 보았다.

北韓은 東獨과는 달리 南北經濟交流를 外國과의 交流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南北經濟交流專担行政機構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結論을 얻었다. 67)

이상과 같은 몇가지 前提와 條件 밑에서, 南北經濟交流에 對備할 우리側 担当機構를 構想하였던 것이다. 끝.

註 67) 北韓은 계속 南北聯邦制를 固執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南北經濟交流를 國內交流라고 主張할 可能性도 없지 않다.